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척수”를 “선박 수”로,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併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잔교·호안·물양장”을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선가대(船袈臺)”를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척수”를 각각 “선박 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F RP”를 각각 “강화플라스틱”으로 한다.

제2조(「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의 개정) 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증양식지”를 “증식·양식 지역”으로, “수질오탁”을 “수질 오염”으로 한다.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불대장”을 “출납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수불대장”을 “출납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불자”를 “출납자”로 한다.

제4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매니폴드”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6) 중 “침로”를 “침로(선박 진행 방향)”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안벽”을 “안벽(부두 벽)”으로, “잔교”를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로, “램프”를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로 한다.

별표 4의 보안시설(외곽 울타리·담 또는 장벽)의 세부 기준란 중 “지주는”을 “기둥은”으로 하고, 같은 표 보안시설(조명시설)의 세부 기준란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선석규모”를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의 규모”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명기되어”를 “명확하게 기록되어”로 한다.

제5조(「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호 중 “(어분·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를 “[어분(생선가루)·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라목 중 “수밀문(水密門)”을 “수밀문(水密門: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으로 한다.

제6조(「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척수”를 각각 “선박 수”로 한다.

제7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중 “관능검사(官能檢査)의”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별표 8 제3호 장비명란 중 “○ 데시케이터(Desiccator)”를 “○ 데시케이더(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도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탈모·상반신의”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제신호기류”를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로, “에이치(H)기류”를 “에이치 기류(H 깃발)”로 한다.

별표 1 제9호의 합격기준란 중 “두부외상(頭部外傷)”을 “머리외상”으로 하고, “두부외상”을 “머리외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 합격기준란 중 “사지”를 “팔다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탈모·상반신의”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9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 목 중 “선석”을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진란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용지도(用地圖)”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로 한다.

제10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표지기의 게양)”을 “(표지깃발의 게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지기(標識旗)”를 “표지깃발”으로, “게양하여야”를 “게양해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 중 “타전(打電)해야”를 “전보 무전을 쳐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타전해야”를 각각 “전보 무전을 쳐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2)나) 중 “타전해야”를 “전보 무전을 쳐야”로 하고, 같은 2) 다) 중 “타전하되”를 “전보 무전을 치되”로, “타전한다”를 “전보 무전을 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중 “타전해야”를 각각 “전보 무전을 쳐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타전하되”를 “전보 무전을 치되”로 하며, 같은 목 4) 및 같은 호 라목2)가) 중 “타전한다”를

각각 “전보 무전을 친다”로 하고, 같은 2) 나) 및 다)부터 마)까지 중 “타전해야”를 각각 “전보 무전을 쳐야”로 하며, 같은 2) 바) 중 “타전한다”를 “전보 무전을 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타전하고”를 “전보 무전을 치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바목 중 “표지기를”을 “표지깃발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표지기를”을 “표지깃발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1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0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2쪽 제12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 제12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별도 2의 제목 중 “표지기(標識旗)”를 “표지깃발”로 한다.

제11조(「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제12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오니(汚泥)류”를 “오니류(오염 침전물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

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밀성(水密性)”을 “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4)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표 중 “수고압력”을 각각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4) 항목란 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수밀문(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으로 하고, 같은 4) 항목란 중 “그 밖의 수밀통로”를 “그 밖의 수밀통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통로)”로 하며, 같은 4) 항목란 중 “수밀 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를 “수밀폐쇄장치(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2)가)(1)(라) 중 “램프게이트”를 “램프게이트(경사식 진출입문)”로 하고, 제4호라목의 “선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4) 중 “수고(水高)”를 “물높이”로 하고, 같은 표 중

“수고압력”을 각각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 중 “거선(擧船)한”을 “들어 올린”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 중 “경하(輕荷)상태”를 “경하[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중 “시체스트”를 “시체스트(Sea Chest: 해수 유입구)”로, “빌지킬”을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곡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로 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후단 중 “명기한다”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4) 전단 중 “개스킷”을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으로, “수밀강제덮개”를 “수밀강제덮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강제 덮개)”로, “폰툰부선”을 “폰툰부선(선박을 정박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 해 놓은 부선)”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FRP”를 “강화플라스틱(FRP)”로, “FRP선체”를 “강화플라스틱 선체”로, “절취재료시험”을 “잘라낸 재료시험”으로 한다.

별표 15의2 제2호다목 중 “밸러스트흡수선”을 “평형수흡수선”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2호가목 중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를 “경하상태에

서”로 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24 제3호나목2) 중 “칭량”을 “무게측정”으로 한다.

별표 27 제2호다목 중 “노임단가”를 “임금단가”로 한다.

별표 31 제2호나목 단서 중 “하이드로릭바란스”를 “하이드로릭밸런스”로 한다.

별표 32 제1호가목 중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을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로, “예인훅”을 “예인용 고리(Hook)”로 하고, 같은 호 중 “예인삭”을 각각 “예인용 줄”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중 “예인훅”을 “예인용 고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예인삭”을 각각 “예인용 줄”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캡스턴”을 “캡스턴(예인용 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용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로,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1. 1. 1 DSC 인코더”를 “1. 1.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수신기 인코더”로, “1. 1. 2 DSC 청수수신기”를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청수시간”을 “수신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DSC 청수수신기”를 “DSC 수신기”로 하고, 같은 서식 제4면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5면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DSC 청수수신기”를 “DSC 수신기”로, “명기된”을 각각 “명확하게 적힌”으로,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청수시간”을 “수신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하고, “DSC 청수수신기”를 “DSC 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하고, “DSC 청수수신기”를 “DSC 수신기”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제13조(「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용골(龍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방향 지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을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자체의 톤 수) 200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단서 중 “유궤화제”를 “유궤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사목 중 “오일 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어유”를 “수산동물유”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안벽”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마목4)가)(1) 중 “선미중경사”를 “선미중경사(선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하고, 같은 가)(3) 중 “매니폴드”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만곡부”를 “만곡부(彎曲部: 굽은 구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최소직경”을 “최소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4)바) 그림 외의 부분 중 “육안검사”를 “맨눈 검사”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명기되어야”를 “명확하게 적혀야”로

하며, 같은 호 바목가) 후단 중 “이서를”을 “서명을”로 하고, 같은 목다)(2) 중 “이서”를 “서명”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다목 후단 및 바목 중 “이서를”을 각각 “서명을”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 전단 중 “에폭시라이닝”을 “에폭시라이닝(epoxy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에폭시 접착재를 대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F.R.P 라이닝”을 “F.R.P 라이닝(F.R.P lining: 침식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재료의 접촉면에 강화플라스틱 약품재를 대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라목2)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적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7) 중 “노즐직경”을 “노즐지름”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 중 “동점도(動粘度)”를 “운동점성계수”로 한다.

별표 12 제3호나목1) 중 “선수단”을 “선수단(선수쪽의 끝점)”으로, “선미단”을 “선미단(선미쪽의 끝점)”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1) 중 “메타센타”를 “메타센터”로 한다.

별표 26 제4호나목5)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1)가)(3) 및 같은 1)라) 중 “성상”을 각각 “성질·상태”로 하며, 같은 호 라목2)가) 중 “파이프내경”을 “파이프안지름”으로 하고, 같은 2)나)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2)라) 중 “나출전부”를 “노출충전부”로 한다.

별표 28의2 제3호다목 중 “경하중량”을 “경하중량(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자체의 중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30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중 “이서”를 “서명”으로 하고, 같은 제1쪽 6) 중 “이서를”을 “서명을”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4쪽 및 같은 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1쪽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제14조(「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의 개정)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너목 중 “모타”를 “모터”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제3호 다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양묘기”를 “양묘기(닷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로 한다.

제15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9조의3제3항 중 “선석(船席)”을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으로 하고,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한다.

제16조(「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17조(「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에 따른”으로, “개서교부”를 각각 “변경교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8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이서란(裏書欄)에”를 “서명란에”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후단 중 “실사”를 “실제 조사”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4) 중 “심도”를 “깊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호나목1)다)5) 중 “저서(低棲)생물”을 “저서생물(低棲生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생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이서”를 각각 “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2쪽 중 “UV 방식”을 각각 “자외선 방식”으로 한다.

제19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 중 “침로(針路)”를 “침로(선수 방향)”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중 “심도”를 “깊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거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5의3 제1호 비고란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이접안용예선”을 “이안·접안용 예선(선박을 육지에 대거나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중 “이접안용예선”을 “이안·접안용 예선”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의사항란 중 “명기하십시오”를 각각 “명확하게 적으십시오”로, “이접안용예선”을 “이안·접안용 예선”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주의사항란 중 “명기하십시오”를 “명확하게 적으십시오”로, “이접안용예선”을 “이안·접안용 예선”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 주의사항란 중 “명기하십시오”를 “명확하게 적으십시오”로, “이접안용예선”을 “이안·접안용 예선”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예상 상병기간”을 “부상 및 질병의 치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1호 중 “양묘기”를 “양묘기(땃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로 하고, “권양기”를 “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땃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한다.

제20조(「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의 개정) 선원의안전및위생에 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을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묘기(땃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를 말한다)·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땃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를 조작하는 작업

제21조(「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관능검사”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2의 검사시설의 지정기준란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균질기(재료를 잘게 부수어 걸쭉한 상태의 액체로 만드는 기기)

별표 5 제2호나목2) 중 “UV-VIS 분광분석계”를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로 한다.

제22조(「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해황(海況)”을 “해황(바다 상황)”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별표 II 제2호 가목과 다목 중 “나포(拿捕)”를 “나포(운송 수단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로, “정선명령”을 “선박운항정지명령(정선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치어”를 “치어(어린물고기)”로 한다.

제23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입식일”을 “들인 날짜”로 하고, “⑧ 물량(입식량, 어획량, 천일염 생산량)”을 “⑧ 물량[입식량(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물을 들여놓는 양), 어획량, 천일염 생산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잔고증명서”를 “잔액증명서”로 한다.

제24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입식제한”을 “입식제한(수산물의 사육시설에 새로

운 수산물을 들여놓는 행위 제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모사전송(FAX)”을 “팩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모사전송(FAX)”을 “팩스”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25조(「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26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해황(海況)”을 “해황(바다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륙량(揚陸量),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을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을 말한다),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륙(揚陸)”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입식일(入植日)”을 “들인 날짜”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바) 중 “조도기”를 “조도기(밝기측정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도”를 “조도(밝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실제 조사”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입식일”을 “들인 날짜”로 한다.

제28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육안(肉眼)”을 “맨눈”으로 한다.

제29조(「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4) 중 “수밀격벽”을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목 8) 중 “수밀문”을 “수밀문(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으로 하고, 같은 목 14) 중 “수밀통로”를 “수밀통로(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통로)”로 하며, 같은 목 16) 중 “수밀폐쇄장치”를 “수밀폐쇄장치(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는 폐쇄장치)”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입회시”를 “참관 시”로 하며, 같은 목 4)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9)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2) 중 “수밀전기등”을 “수밀전기등(방수기능이 있는 전기등)”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3) 중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

드,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을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으로 하고, 같은 목 14) 중 “자동폐쇄형방화댐퍼”를 “자동폐쇄형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 목3)부터 6)까지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입회시”를 “참관 시”로 하며, 같은 목 4)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1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한다.

별표 14 제3호다목 중 “수밀격벽판”을 “수밀 격벽판(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의 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라목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1)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1) 후단 중 “명기한다”를 “명확하게 기록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18) 중 “매니폴드”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가)(3)(나) 중 “교반기”를 “교반기(회전시켜 섞는 장치)”로 하며, 제2호나목1)나)(2)(마) 중 “리벳”을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으로 하고, 제3호나목8)가)(2) 중 “수동아크용접기”를 “수동 아크용접기(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기)”로 하며, 같은 목 13)가)(4) 중 “그라인더”를 “그라인더(연마기)”로 하고, 같

은 목 16)나)(10) 중 “스웨이징(Swaging)”을 “스웨이징(압축가공)”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6)가)(2) 및 같은 16) 다)(3) 중 “안면부”를 각각 “얼굴 부위”로 한다.

별표 19 제2호나목 단서 중 “하이드로릭바란스”를 “하이드로릭밸런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강화플라시틱(FRP)”을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제30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중 “상병(傷病)”을 “부상 및 질병”으로, “자문하여야”를 “자문해야”로 한다.

제31조(「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척수”를 “선박 수”로 한다.

제32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양륙”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조(「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수

제3조의3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지시하여야”를 “지시해야”로, “권고하여야”를 “권고해야”로 한다.

제34조(「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안전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별표 1 중 “척수”를 각각 “수”로 한다.

제35조(「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양륙항”을 “양륙항(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항을 말한다)”으로, “양륙”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6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장품, 艤裝品)

별표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4)가) 및 나) 외의 부분, 5) 및 같은 5) 중 “의장품”을 각각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라) 중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한다.

별표 제1호마목1)라) 중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잔교, 대차 등)”을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 대차 등]”로 한다.

제37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을 포함한다)”을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나포”를 “나포(운송 수단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 본문 중 “해황(海況)”을 “해황(바닷물의 온도, 비중, 염분, 조류 등 바다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륙항”을 “양륙항(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항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호 중 “선박계선장소(선석 및 장소)[Position of the Vessel(Berth and Station)]”를 “선박계선장소[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및 장소(Position of the Vessel(Berth and Station))]”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 “채포 어종”을 “채취·포획어종”으로 한다.

제38조(「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매니폴드(MANIFOLD)”를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리벳”을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한다)”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적재하여야”를 “적재해야”로, “총헛치선(總Hatch船)등”을 “총해치선(總Hatch船)등”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헛치선등”을 “총해치선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양륙(揚陸)”을 “양륙(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으로, “참관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27조제6항 후단 중 “수밀(水密)”을 “수밀(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밀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를 제외한다)”를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한다. 이하 같다(탱크컨테이너를 제외한다)]”로, “수밀화물적재함”을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을 말한다)”으로 한

다.

제39조제1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벽”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제19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돌에는”을 “굴뚝에는”으로 한다.

제223조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234조제1호 중 “피복(被服)”을 “천”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9조(「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제4호 중 “명기(明記)해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제4호 및 제5호 중 “명기(明記)해야”를 각각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제3호 및 제4호 중 “명기(明記)해야”를 각각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40조(「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표 1 중 “잔교부력”을 “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부력”으로,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한다.

제41조(「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의 개정)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횡메타센타”를 “횡메타센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횡메타센타의”를 “횡메타센터의”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33조의3 중 “수밀성(水密性)”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2 중 “수밀 격벽”을 “수밀 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2조(「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등명기의 시설·장비란 나목 중 “조도계”를 “조도계(밝기측정기)”로 한다.

제43조(「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용지도(用地圖)”를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로 한다.

제44조(「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제1항에 따라”로, “편철하여야”를 “편철해야”로, “철목”을 “편철항목”으로, “부기하여야”를 “부기해야”로 한다.

제45조(「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잔교”를 “잔교(棧橋: 교량형 접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의 개정)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시설보유기준란 중 “도막”을 “도막(도로 도포막)”으로, 같은 란 중 “버어니어캘리퍼스”를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로 한다.

제4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안벽(岸壁)”을 “안벽(부두 벽)”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48조(「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선박운항자의 설정기준란 2) 중 “도선구”를 “도선구(도선안내구역)”로 한다.

제49조(「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풍림(防風林)”을 “바람막이숲”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육안”을 “맨눈”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50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제51조(「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의 개정)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모사전송”을 “팩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를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모사전송”을 “팩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모사전송”을 각각 “팩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5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3 제1호 1의 비고란 중 “CITES”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으로, “IWC”를 “국제포경위원회(IWC)”로, “IUCN”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으로 한다.

제53조(「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4조(「해양수산물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물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가) 중 “어분과 어유”를 “어분(생선가루)과 수산동물유”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중 “조사(照査)”를 “조사(照射: 빛을 쬌는 것)”로 한

다.

별표 3 제1호다목 중 “채취, 채포(採捕)”를 “채취·포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나목2) 전단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자연채포”를 “자연 채취·포획”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다목2) 중 “전리방사선”을 “전리(電離: 이온화)방사선”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자연채포”를 각각 “자연 채취·포획”으로, “자연채포량”을 “자연 채취·포획량”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1) 중 “자연채포”를 “자연 채취·포획”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마목1)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55조(「해양수산물부 직원 복제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물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의2에 따라”로 하고, “제식”을 “양식”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별·지질·제식”을 “종별·옷감 재질·양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피복의 관리등)”을 “(의복의 관리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복의 종별·지질·제식 및 형상”을 “제복의 종별·옷감 재질·양식 및 형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지질”

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목 제5항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의 내용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제1항 중 “자켓제식”을 “자켓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제5항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하며, 같은 표 종류 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내용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제2항 중 “명찰을”을 “이름표를”로 하며, 같은 표 종류 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의 내용란 중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제5항 중 “명찰을”을 각각 “이름표를”로 하며, 같은 표 종류 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의 내용란 중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의 내용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내용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내용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종류 나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종류 다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라목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의 내용란 중 “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같은 표 와이셔츠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와이셔츠의 제식의 내용란 중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넥타이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넥타이의 제식의 내용란 중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모표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단추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바클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허리띠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표장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며, 같은 표 계급장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계급장의 제식의 내용란 제1항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항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항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항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항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항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표 종류의 명찰란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하며, 같은 표 명찰의 구분란 중 “지질”을 “옷감 재질”로, “제식”을 “양식”으로 한다.

제5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채수기(採水器)”를 “채수기(물 퍼 올리는 기구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현지실사”를 “현지 실제 조사”로 한다.

제5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가) 중 “저질토”를 “밑바닥 퇴적물 토양(저질토)”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저질(底質)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토양(저질토) 상태”로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 중 “반돈채수기(van Dorn 採水器)”를 “반돈채수기(van Dorn 채수기: 합성고무로 만든 원통모형의 물 퍼 올리는 기구)”로, “니스킨채수기(Niskin 採水器)”를 “니스킨채수기(Niskin 채수기: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물 퍼 올리는 기구)”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2) 중 “부란기”를 “배양기(인큐베이터)”로 하고, 같은 목16) 중 “교반기”를 “교반기(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로 하며, 같은 목 21) 중 “흡후드”를 “흡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로 한다.

별표 10 제1항가목 중 “관능검사”를 “관능검사(사람의 감각에 의한 평가)”로, “성상”을 “성질 · 상태”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중 “탁질(濁質)”을 “이물질”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성상”을 “성질 · 상태”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3항 중 “I/L”을 “수입 승인서(I/L, Import License)”로 하고, 제14항 중 “B/L”을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으로 한다.

제58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오탁방지막”을 “수질오염 방지막”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건조도막”을 “건조 도막(도로 도포막)”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유결화제”를 “유결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7조의3제2항 중 “저질(底質) 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중 “저질 상태”를 “밑바닥 퇴적물 상태”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별표 10 제2호다목 중 “버큘탱크로리”를 각각 “진공탱크로리”로 한다.

별표 11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12 중 “오일펜스”를 각각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자재의 기준란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29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다목2) 중 “동점도”를 각각 “운동점성계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표 32 제4호 자재·약제의 종류의 오일펜스란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연륙교”를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정상”을 각각 “성질·상태”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앞쪽 중 “오일펜스”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로 한다.

제59조(「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다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하는”

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를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로 한다.

제10조의4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의5제2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중 “표기하여야”를 “표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조의10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의12제1항제8호 중 “승선하여야”를 “승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13제1항 중 “지도·감독하여야”를 “지도·감독해야”로 한다.

제15조의14제1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5조의15제2항 전단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및 제6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척수”를 “수”로 한다.

제26조의3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6조의4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의3 제3호 중 “정지하여야”를 “정지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바목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바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않는다”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다목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u>오일펜스</u> 를 말한다.	제12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 ----- ----- ----- ----- <u>해양유류오염</u> <u>확산차단장치(Oil Fence)</u> ----- ----.

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시험·조사”라 함은 <u>증양식</u> <u>지</u> ·어구자재·어로· <u>수질오</u> <u>탁</u> 기타 수산자재의 시험·조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증식</u> · <u>양식 지역</u> ----- <u>수</u> <u>질 오염</u>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 <u>비치하여야</u>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생략)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출 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u>수불대장</u> 3. ~ 5. (생략) ② (생략)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 ----- ----- <u>비치해야</u> ----- -----. 1. (현행과 같음) 2. ----- ----- ----- -- <u>출납대장</u>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 ----- ----- -----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u>아니한</u>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 ~ 다. (생략) 라. 식수탱크, 펌프 또는 <u>매니폴드</u> 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 ~ 자. (생략) 2. ~ 10. (생략)	1. ----- ----- ----- <u>않은</u>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치관)</u> ----- ----- 마. ~ 자.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안정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생략)	제17조(보안정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성능요건 가. ~ 라. (생략) 마. 선박보안정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정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1) ~ (5) (생략) (6) 국제항해선박의 <u>침로(針路)</u> (7)·(8) (생략) 2. (생략)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침로(선박 진행 방향)</u> (7)·(8)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 ----- ----- ----- ----- -----.
1.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 돌핀, 선착장 및 램프 등 선박계류지역	1. <u>안벽(부두 벽)</u> --- <u>잔교(棧橋: 다리모양의 구조물)</u> ----- ----- <u>램프(경사식 진출입로)</u> -----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3조의4(검정 방법)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공미끼(<u>어분·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u>)의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 방법	2. -----[<u>어분(생선가루)·감자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u>]-----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u>1. 손틀방류</u>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 ----- ----- ----- ----. <u>1. 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를 말한다.이하 같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건제품·냉동품·염장품 등의 제품별·품목별로 검사항목, <u>관능검사(官能検査)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u>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 ----- ----- ----- ----- ----- ----- <u>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u>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1. 2. (생략)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u>탈모 상반신 반명함판</u>) 2장 ② (생략)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u>국제신호기류</u> 중 <u>에이치(H)기류</u>에 따른다. ②·③ (생략)	----- ----- <u>제출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3. ----- -- <u>모자를 쓰지 않은</u>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 ----- ----- ----- ----- ----- <u>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u> ----- <u>에이치 기류(H 깃발)</u>-----. ②·③ (현행과 같음)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영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① ----- ----- ----- ----- ----- ----- 제출해야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공고안 가. ~ 다. (생략) 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총인원,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 시설의 <u>선석</u> 하나당 분양 인원 또는 회원 마. ~ 아. (생략)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u>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u> ----- 마. ~ 아. (현행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u>표지기의 게양</u>)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u>표지기(標識旗)</u> 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u>게양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제10조(<u>표지깃발의 게양</u>) ----- ----- ----- ----- <u>표지깃발을</u> ----- ----- ----- <u>게양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 <u>해양수산부령</u> 인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 ----- ----- <u>해양수산부령</u> <u>으로</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3.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준설물질 및 <u>오니(汚泥)류</u>	다. ----- ----- ----- <u>오니류(오염 침전물류)</u>
라. ~ 바. (생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생략)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사이 또는 외국의 <u>호소·하천</u> 및 항내의 수역에서만 항해하는	② ----- ----- <u>호소(湖沼: 호수와 늪)</u> -----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시검사) ① (생략)	제21조(임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 <u>해양수산부령</u> 인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u>해양수산부령으로</u> ----- ----- -----.
1. 선박의 선박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u>수밀성(水密性)</u>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1. ----- ----- ----- ----- <u>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u>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龍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0. ----- <u>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11. ~ 27. (생략)	11. ~ 27. (현행과 같음)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① (생략)	제23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 ---- <u>해양수산부령으로</u> ----- ----- -----.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1. ---- <u>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사람, 화물 등을 적재하지 않은 선박자체의 톤 수) 200톤]</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생략)	비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제 또는 유결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② ----- ----- ----- ----- <u>유결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 ----- ----- ----- ----- ----- ----- ----- ----- ----- ----- ----- ----- ----- ----- ----- <u>신청해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 <u>척수</u> 및 검사의 기준	5. --- 선박 수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화물유 유출에 대비한 <u>오일펜스</u> 설치 여부	사. ----- <u>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u> -----
아.·자. (생 략)	아.·자.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 장비) ①·② (생략)	제19조의3(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 장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u>선석(船席)</u> 마다 1개 이상 <u>설치하여야</u>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벨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u>설치하여야</u> 한다.	③ ----- ----- <u>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u> ----- ----- <u>설치해야</u> ----- ----- <u>설치해야</u>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 ----- ----- ----- ----- <u>제출해야</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u>탈모</u>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 ----- ---- <u>모자를 쓰지 않은</u>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순톤수의 산정) ① (생략)	제37조(순톤수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u>당해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화물 적재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아니하는</u>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u>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 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u> (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u>개서교부</u> 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u>개서교부</u> 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u>당해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u> .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u>아니한</u>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②----- ----- <u>해당</u> ----- ----- ----- <u>않는</u> ----- ----- ----- <u>법 제13조에 따른</u> ----- ----- ----- <u>변경교부</u> ----- ----- <u>변경교부</u> ----- ----- <u>해당</u> ----- ----- <u>않은</u> ----- ----- ----- <u>그렇지 않다</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u>실사</u> 를 요청할 수 있다.	----- ----- <u>실제 조사</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u>침로(針路)</u> 유지가 어려운 때 3. 4. (생략)	제4조의2(선장의 직접 지휘)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침로(선수 방향)</u> ----- 3. 4. (현행과 같음)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u>	<u>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u>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 내작업이란 다음 <u>각호의</u> 작업을 말한다.	제3조(위험한 선내작업등) ①--- ----- ----- <u>각 호의</u> -----.
1. 양묘기·권양기를 조작하는 <u>작업</u>	1. 양묘기(뺏줄을 감거나 푸는 <u>기계를 말한다</u>)·권양기(도르 <u>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 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u>)를 조 <u>작하는 작업</u>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① (생략)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금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와 <u>관능검사의</u>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거나 품질 검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 <u>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 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생략) ②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u>해황(海況)</u>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u>정하여야</u> 한다. ③ ~ ⑦ (생략)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해황(바다 상황)</u> ----- ----- <u>정해야</u> -----. ③ ~ ⑦ (현행과 같음)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산물격리·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入殖)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u>공고하여야</u>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교통차단· <u>입식제한</u>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제18조(수산물격리·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공고해야</u> -----. 1. ~ 4. (현행과 같음) 5. ----- <u>입식제한(수산물</u> <u>물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수산물</u> <u>물을 들여놓는 행위 제한을</u> <u>말한다. 이하 같다)</u>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 ----- ----- ----- ----- ----- ----- ----- ----- ----- -----

원 지원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u>모사전송(FAX)</u>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u>제출하여야</u> 한다. 1.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u>모사전송(FAX)</u>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u>제출하여야</u> 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 <u>제출해야</u> ----- ----- <u>팩스</u> ----- ----- <u>제출해야</u> -----.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 ----- ----- ----- ----- ----- ----- ----- <u>제출해야</u> ----- -----. ----- <u>팩스</u> ----- ----- ----- <u>제출해야</u>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과제· <u>대합실</u>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 ----- ----- ----- ----- ----- ----- ----- ----- ----- ----- - <u>대기실</u>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시·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 실적, 조업 수심(水深), <u>해황</u> (海況),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1. ----- ----- <u>해황</u> (바다 상황)-----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揚陸量), <u>조합원 수</u> , <u>위탁판매액</u> 등을 포함한다]	2. -----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을 말한다), <u>조합원 수</u> , <u>위탁판매액</u> 등을 포함한다]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2조(포획·채취 실적의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u>양륙</u> (揚陸)할 때마다 별지	제22조(포획·채취 실적의 보고) ① ----- ----- ----- -- <u>양륙</u> (선박으로부터 수산물

제18호서식의 포획·채취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u>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u>제출해야</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유통수산물중자의 품질표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유통수산물중자의 품질표시)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u>입식일</u> (入植日), <u>채묘일</u> (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물중자의 생산이력 표시	3. ----- <u>들인날짜</u> ----- -----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육안(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 ----- ----- ----- ----- ----- ----- ----- ----- 맨눈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u>상병(傷病)</u> 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u>자문하여야</u> 한다.	제5조의4(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① ----- <u>부상 및 질병</u> ----- ----- ----- ----- ----- ----- ----- ----- ----- ----- <u>자문해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u>척수</u>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3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선박 수</u>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생략)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획물의 <u>양륙</u> 및 매매실적	4. ----- <u>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 어장으로 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저서(底棲)동물지수	2.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 <u>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지수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 ----- ----- <u>해</u> <u>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4등급: 어업면허·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어장환경 개선 노력 정도를 <u>감안하여</u> 4년	4. ----- <u>고려하여</u> -----

의 범위에서 어업면허·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환경 개선 및 어장 내 시설물의 위치 이동을 <u>지시하여야</u> 하고, 2회 이상 4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업면허·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어장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u>권고</u> <u>하여야</u> 한다. ② (생략)	----- -----. ----- ----- ----- ---- <u>지시해야</u> ----- ----- ----- ----- ----- ----- <u>권고</u> <u>해야</u> -----. ② (현행과 같음)
--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어항관리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제19조(어항관리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안건으로 부의하는</u> 사항	4. -----
⑤ (생략)	<u>회의에 부치는</u> -----
	⑤ (현행과 같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외수역 또는 해외에서 어업·양식·가공 또는 유통 등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조의2(해외수산자원) ----- ----- ----- ----- ----- 수산물[사료의 원료가 되는 어분(생선가루)을 포함한다]-----.
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생략) ② 법 제7조제1항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2. (생략) 3. 해당 어선의 조업구역이 해적이나 무장단체에 의해 나포될 우려가 있는 해역인 경우 4. (생략)	제17조(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나포(운송 수단 및 그에 실린 재화나 사람을 붙잡는 것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u>해황(海況)</u>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u>하여야</u>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해진 정지처분 개시일까지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처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u>하여야</u> 한다.	④ ----- ----- ----- <u>해황(바닷물의 온도, 비중, 염분, 조류 등 바다의 여러 가지 상황)</u> ----- ----- ----- ----- <u>해야</u> -----. ----- <u>않은</u> ----- ----- ----- ----- <u>해야</u>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 ① (생략)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원양어획물 양륙량 확인증을 해당 보고를 한 자에게	제25조(양륙량 보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집합형압력용기”란 매니폴드(MANIFOLD)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튜브 및 실린더 다발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을 말한다)----- -----. 10. ~ 30. (현행과 같음)
제5조(공사 등) ①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저장한 선박에서는 공사 [용접, 리벳 용접 또는 그 밖에 불꽃이나 발열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제5조(공사 등) ① ----- ----- ---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굽은 못을 말한다) ----- ----- 안 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위험물을 부선으로써 평수구역과 그 평수구역으로부터 그 부선으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역에서 운송할 경우와 화약고에 적재하여야 하는 화약류 외의 위험물을 부선 외의 선박으로서	제10조(적재방법의 특례) ① --- ----- ----- ----- ----- 적재해야 ----- -----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1. 원양어획물 양륙량 보고서 또는 변경 보고서에 기재된 선박과 양륙항에 입항한 선박이 동일한 선박인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3. (생략) ③ ④ (생략) 제25조의2(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2. ~ 7. (생략) ② ~ ⑥ (생략)	발급해야 -----. ----- ----- -. 1. ----- ----- ---- 양륙항(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항을 말한다)----- ----- 2. 3.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 ----- ----- ----- ----- 보고해야 --- -.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화물창의 각 현에 갑판이 없는 것 또는 창구의 각 현에서의 갑 판의 폭이 그 선박 폭의 10분의 1 이하 또는 60센티미터 이하의 것[이하 “총헛치선(總Hatch船 등)”이라 한다]으로 평수구역에 서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적 재방법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u>아니한다</u> . 다만, 여객을 승선시 키고 있을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 ----- ----- ----- ----- “총해치선(總Hatch 船)등”----- ----- ----- ---- <u>않는다</u> . ----- ----- <u>그</u> <u>렇지 않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총헛치선등으 로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는 경 우에는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 를 준용한다.	③ ----- 총해치선등----- ----- ----- -----.
제17조(하역) 위험물의 선적, 양륙 (揚陸)이나 그 밖의 하역을 할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 행하는 사람은 그 하역에 <u>참관 하여야</u> 한다.	제17조(하역) ----- 양륙 (선박으로부터 화물 등을 육상 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참관해야 - -----.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① ~ ⑤ (생 략)	제27조(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⑥ ----- ----- -----

제35조까지, 제36조제2항, 제38 조와 제2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및 제205조 중 “컨 테이너”는 “자동차”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제36조제2항 중 “수밀(水密)의 금속재컨테이너” 및 “컨테이너”는 각각 “자동차” 로 보며, 제38조제2항 중 “수밀 컨테이너(탱크컨테이너를 제외 한다)”는 “자동차의 수밀화물적 재함”으로, “수납”은 “적재”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는 “자동차의 수밀금속화물적재함”으로, “수 납”은 “적재”로 본다.	----- ----- ----- ----- ----- ----- ----- 수밀(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수밀컨테이 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 테이너를 말한다. 이하 같다(탱 크컨테이너를 제외한다)]----- -----수밀화물적재함(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화물적재함 을 말한다)-----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운송금지) ① 다음 각 호 의 화약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 는 <u>아니 된다</u> .	제39조(운송금지) ① ----- ----- -- <u>안 된다</u>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다음 각 목의 연화(煙火) 가. (생 략)	12. ----- 가. (현행과 같음)

나. <u>직경 22.2밀리미터</u> 이상의 크래커보울	나. <u>지름</u> -----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화약류의 하역) ① ~ ④ (생 략)	제45조(화약류의 하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하역을 하려는 <u>안벽</u> 또는 다 른 선박과의 사이에 상당한 높 이의 차가 있을 경우나 그 밖에 제4항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 는 하역기계(자동차는 제외하 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 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⑤ ----- <u>안벽(부두 벽)</u>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8조(화재예방장치) 면화를 하 역하는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준수하여야</u> 한다.	제198조(화재예방장치) ----- ----- ----- <u>준수해야</u> ---.
1. <u>연돌</u> 에는 불꽃의 토출을 방 지하는 데에 충분한 장치를 하여 둘 것	1. <u>굴뚝</u> 에는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화약류 저장선의 화약류를 저장 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 한 최소한도에 국한하고, 10센 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u>직경</u>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 워두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 리를 사용하고 바깥쪽에는 외 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강철 재질로 만든 문을 갖춰 둘 것	3. ----- ----- ----- <u>지름</u> ----- ----- -----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화 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234조(화기취급의 제한 등) --- ----- ----- ----- -----.
1. 안전성냥 외의 성냥이나 쇠 굽이 붙어있는 신발류를 착용 하거나 <u>피복(被服)</u> 으로 싸지 <u>아니한</u> 철제공구와 같이 불꽃 을 유발하기 쉬운 물품을 소 지하지 말고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1. ----- ----- ----- <u>천</u> ----- ----- <u>얇은</u>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유어장관리선) ① (생략)	제5조(유어장관리선)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u>비치하여야</u>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 <u>각 호의</u> ----- <u>비치해야</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직경</u>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멍줄	3. <u>지름</u>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제도 1부를 신청인에게 <u>발급하여야</u> 한다.	③ ----- ----- ----- ----- ----- ----- <u>발급해야</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가. ~ 라. (생략) 마.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 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u>횡메타센터</u>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서 0.3미터 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u>횡메타센터</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제9조(복원성의 요건) ----- ----- -----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u>적합하여야</u> 한다.	----- ----- ---- <u>적합해야</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u>횡메타센터의</u> 높이는 0.3미터 이상일 것	3. ----- ----- -- <u>횡메타센터의</u> ----- -----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 등) ① (생략)	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u>각호의</u> 방법에 <u>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u> 한다.	②----- ----- ----- <u>각 호</u> <u>의</u> ----- <u>설치해</u> <u>야</u> ----.
1. 사용하는 로프크립의 수 및 크기는 와이어로프의 <u>직경에</u> 비례할 것	1. ----- ----- <u>지름</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선장은 화물창에 적재한 후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외관 검사를 하고, 빌지의 양을 조사하여 <u>수밀성(水密性)을</u> <u>확인하여야</u> 한다.	제33조의3(화물창 적재 후 점검) ----- ----- ----- ----- <u>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u> ----- <u>확인해야</u>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맨뒷면과 <u>편철하여야</u> 할 서면의 첫면과의 <u>철목간에</u>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u>부기하여야</u> 한다.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 <u>제47조제1항에 따라</u> ----- ----- ----- <u>편철해야</u> ----- <u>편철할</u> <u>목</u> ----- ---- <u>부기해야</u> ----.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u>	<u>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u>
제9조(계류시설) ①안벽·소형선 부두· <u>잔교</u>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선착장·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 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계류시설) ①----- ----- <u>잔교(棧橋: 교량형 접안</u> <u>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 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잔디밭, <u>방풍림(防風林)</u> , 분수 대 등 조경시설 3. (생략)	제2조(해수욕장시설)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바람막이숲</u> ----- ----- 3.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①·② (생략) ③ 관리청은 시설점검을 <u>육안</u> (肉眼)으로 하거나 정밀기계 등 을 이용하여 <u>실시하여야</u> 한다.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맨눈</u> --- ----- ----- <u>실시해야</u> -----.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 (생략)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매일 전화· <u>모사전송</u>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u>하여야</u> 한다.	②----- <u>각 호의</u> ----- ----- <u>팩스</u> ----- ----- <u>해야</u> ----- -----.
1. 현재의 위치	1. -----
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	2. ----- --
3. 전일 조사의 내용	3. -----
4.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4. ----- -----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즉시 전화· <u>모사전송</u>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u>하여야</u> 한다.	③----- <u>제6조제4호</u> <u>부터 제6호까지의</u> ----- ----- <u>각</u> <u>호의</u> ----- ----- <u>팩스</u> ----- ----- <u>해야</u> -----.
1. 현재의 위치	1. -----
2. 위반행위자	2. -----
3. 위반사실의 내용	3. -----
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	4. -----

소	--
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	5. -----
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	6. -----
7. <u>기타</u>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7. <u>그 밖에</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 (생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 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 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4조(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표지기둥을 설 치해야 ---. ③·④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 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속 직 원의 제복(모자·신발류등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 한 사항과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조의2에 따라 ----- ----- ----- 양식 ----- ----- -----.
제3조(복제) 제2조 각 호의 업무 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지질·제식 및 형 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삭제	제3조(복제) ----- ----- ----- 종별·옷감 재질·양식 - -----. 1. (현행과 같음)
제8조(피복의 관리등) (생략)	제8조(의복의 관리등) (현행과 같 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현지 직접조사는 <u>채수기(採水器)</u> ,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생략)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채수기(물 퍼 올리는 기구를 말한다)</u> ----- ----- ----- ②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 ③ (생략)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유차단막 또는 <u>오타방지막</u> 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u>하여야</u>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삭제 3. (생략)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u>수질오염 방지막</u> ----- ----- <u>해야</u> ----- -----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u>건조도막</u> 안에 총주석함량이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방법)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건조 도막(도료 도포막)</u> ---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과피제로 작용하지 <u>아니하는</u>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u>사용하여야</u> 한다.	----- ----- ----- --- <u>않는</u> ----- --- <u>사용해야</u> -----.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 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u>결정하여야</u> 한다.	----- ----- ----- ----- ----- --- <u>결정해야</u> -----.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u>유겔화제</u> 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③ (생 략)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u>저질</u>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 ----- ----- -- <u>밑바닥 퇴적물 상태</u> ----- ----- ----- -----.
③·④ (생 략)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u>저질(底質)</u>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밑바닥 퇴적물 상태(저질 상태)</u> -----	②·③ (생 략)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1. 오일펜스</u> 2. ~ 5.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 ----- ----- ----- <u>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u>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물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1조의2(여객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2.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u>아니한</u> 여객선	다. ----- ----- ----- ----- <u>않은</u> -----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 ----- ----- ----- -----

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
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
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
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확인해야 -----.

----- 대해서 -----

----- 않는 -----

----- 해야 -----.

1.·2. (현행과 같음)

③ ----- 기재해
야 -----.

1. (현행과 같음)

2. -----

----- 첨부해야

야 한다)

3. ~ 6. (생략)

④ 삭제

⑤ (생략)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
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
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 공모) 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
(이하 “사업자공모”라 한다)를 하
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
허를 하려는 항로 및 면허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
수산청장은 사업자공모에 응한 자
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 및 재무건
전성 등을 평가하고 해상여객운송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

3.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발급해야 -----.

제3조(사업자 공모) ① -----

----- 공고해야 -----
-.

② -----

----- 선정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

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조의4(보험 등예의 가입)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
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
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이하 “운항개시일”이라 한다) 전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4(보험 등에의 가입) ① -----

----- 가입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illegible]

하 여 야 한다.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내항 여객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 중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한다)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⑦ (생략)

제5조의2(항로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고시하는 경우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전자문

Ой — — — — .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않는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항로고시) ① -----

----- 고시해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① -----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

제출해야

해야

해야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재해야

③ 발급해야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제출해야

② 기재해야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제출해야

1. ~ 3. (현행과 같음)

②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략)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① ---

 --- 제출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야

1. ~ 3. (생략)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내
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의
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해당 여객선을 운항하는 동안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선박 및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이력관리장부를 인계(선박을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해당 선박을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 ③ (생략)
④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여객 등이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① ---

----- 작
성·관리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② 비치해야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안전정보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야 -----.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 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 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변경인가) ① -----

----- 제출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

제출해야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

----- 제출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와 휴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서 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
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21조
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
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중
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

--- 제출해야 ---.

② -----

----- 공고해야 -----.

제15조의2(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
어야 하는 사항 등) ① -----
----- 작
성해야 -----

② _____

으로 선박시설 등을 <u>점검하여야</u> 한다.	----- <u>점검해야</u> -----.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 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u>제 출하여야</u>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 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 시일 후 3일 이내에 <u>제출하여야</u> 한다.	제15조의3(운항관리규정의 제출) ① ----- ----- ----- ----- ----- ----- <u>제출 해야</u> -----. ----- ----- ----- ----- ----- ----- ----- ----- ----- ----- <u>제출해야</u>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 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u>비치하 여야</u> 한다.	----- <u>비치해야</u> -----.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 차 등) ① (생 략)	제15조의5(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 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 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 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 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 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 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u>발 급하여야</u> 한다.	② ----- ----- ----- ----- ----- ----- ----- ----- ----- ----- ----- ----- <u>발급 해야</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 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 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내 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승선 권(승선 개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여객의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및 연락처 등을 <u>표기하여야</u> 한다.	① ----- ----- ----- ----- ----- ----- <u>표기해야</u> -----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승선권을 발급할 때 및 승선할 때 에는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 기	② ----- ----- -----

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작성한 여객명부를 출항 전에 선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또는 화물 운송의뢰인(이하 “운송의뢰인”이라 한다)의 성명,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차량선적권(차량운송전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운송의뢰인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등록한 자가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 따른 쾌속카페리 여객선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차도선형 여객선을 이용하는 운송의뢰인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확인해야 -----.

③ -----

----- 송부하
야 -----.

④ -----

----- 발급하
야 -----.

⑤ -----

----- 제출
해야 -----
----- 확인해야 -----.

----- 않을 -----.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생략)

4. 삭제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

----- 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0(운항관리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않은 -----

3. (현행과 같음)

5. -----

할 수 있다.	-----.
② 운항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 ----- ----- ----- ----- ----- ----- <u>보고해야</u> ----- -.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생 략)	제15조의15(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u>조치하여야</u>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 ----- <u>조치해야</u> ----- ----- ----- -----. ----- ----- <u>보고해야</u> ----- -.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 ----- ----- ----- ----- -----

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u>제출해야</u>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u>아니한다</u>)	2. ----- ----- ----- <u>않는다</u>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확인하여야</u>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u>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u>하여야</u> 한다.	② ----- ----- ----- ----- ----- ----- ----- <u>확인해야</u> -----. ----- ----- ----- <u>않는</u> ----- ----- ----- <u>해야</u> -----.

1.·2. (생 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외국국적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은

1.·2. (현행과 같음)

③ ----- 기재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발급해야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 제출해야 -----.

제외한다)에 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생 략)

제16조의3(등록조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2. (생 략)

3. 예선(曳船)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 이상을 예인하지 아니할 것

4.·5. (생 략)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

-----.

1.·2. (현행과 같음)

② ----- 확인해야 -----.

----- 않는 ----- 해 야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등록조건) -----

-----.

1.·2. (현행과 같음)

3. ----- 않을 -----

4.·5. (현행과 같음)

제17조(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

시적인 운송신고)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 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illegible]

② _____

- 기재해야 -----.

③ -----

-- 말급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령 15년(폐기물운반선의 경우에는 17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해당 화물운송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 6. (생략)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 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

1. 않는

2.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출해야 -----.

[illegible]

(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

제출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해야 -----.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①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 않은 -----.

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만,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생략)

6.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생략)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

----- 않는다.

5. (현행과 같음)

6. ----- 않는다-----

② ----- 확인해야 -----.

----- 않은 -----.

----- 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③ ----- 기재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⑦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6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

----- 발

----- 금해야 -----.

⑥ _____

- 기록·관리해야 _____.

1. ~ 7.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22조의2(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
신 신청) ① -----

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
영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
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영
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
입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제
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

제출해야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야

제24조(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① -

행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권, 예치증서 등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 보증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예치하여야 한다.

가입 해야

② _____

인
형

은
글 _____.

1. 2. (현행과 같음)

③

해야

예 치 해야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금액 또는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
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
에만 해당한다)

5. (생략)

② 내항화물운송사업자(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 예

치해야 ----- 가입
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4. _____

5. (현행과 같음)

② _____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등록된 선박의 척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 6. (생략)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1호의4 서식의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및 제21호의5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금지행위) 법 제41조의3 제1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

----- 않는다.

③ -----

1.·2. (현행과 같음)

3. ----- 수 -----

4.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실적보고 등) -----

----- 제출해야 -----
-----.

제26조의4(금지행위) -----

로 정하는 행위”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2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류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 8. (생략)

----- 않고 -----

제29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납부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 해야 -----.

2. ~ 8. (현행과 같음)